

변경대비표

2020년 10월 23일

1. 변경대상 서류 : 등록신청서

2. 변경대상 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5년 10월 14일

3. 변경사유

-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신설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이대원 → 김동현, 2020.10.30 시행)
-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

4. 변경사항

| 항 목 | 정정사유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제2부. 4. 집합투자업자 |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신설 | (신설) | KIM Vietnam Fund Management Co., Ltd |
| 제 2 부. 5. 가. 운용전문인력 (1) 책임운용전문인력 |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| 이대원 | 김동현 |
| 제 2 부. 5. 가. 운용전문인력 |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 | (신설) | 배승권 |
| 제 2 부. 9.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기본운용전략 |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신설 | (신설) |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 · 운용지시업무 및 운용 · 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를 운용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KIM Vietnam Fund Management Co., Ltd에 위탁할 예정입니다. |
| 제 4부. 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|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신설 | (신설) | KIM Vietnam Fund Management Co., Ltd |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0년 10월 2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2. 정정대상 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5년 10월 14일
3. 정정사유
 -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신설
4. 정정사항

| 항 목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 4 조의 2(해외위탁 집합투자업 자의 업무) | (신설) | <p>제4조의2(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업무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·운용지시업무 및 운용·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(이하 “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KIM Vietnam Fund Management Co., Ltd</p> <p>③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.</p> |
| 제4조의 2(해외보관 | 제4조의2(해외보관대리인)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 | 제4조의3(해외보관대리인)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 |

| | | |
|-------------|--|--|
| <p>대리인)</p> | <p>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, 해외보관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.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 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| <p>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, 해외보관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.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 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|
| <p>부 칙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 설)</u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|